

# 자산개발사업 추진

□ 문서번호	P-경영지원-17
□ 제·개정일자	2021.10.27.
□ 개정번호	2



## 승 인

제 개 정	프로세스 오너	작 성		검 토		승 인	
	시설본부 자산개발처	직위	성명	직위	성명	직위	성명
		자산개발부장	정범	자산개발처장	정현숙	시설본부장	신형하

<b>관 련 부 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부서 : 자산개발부서(시설본부 자산개발처)</li> <li>- 관련부서 : 국토교통부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제 · 개정 이력

버 전	개정일자	개정 사유 및 내용	시행일자
0	2018.03.21.	▪ 프로세스 개념 적용에 따른 전면 개정	2018.03.21.
1	2020.08.28.	▪ 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개정	2020.09.10.
2	2021.10.27.	▪ 사전점검 제도개선 방침 반영에 따른 개정	2021.10.28.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		▪	



## 목 차

1. 목적 및 적용범위	3
1.1 목적	3
1.2 적용범위	3
2. 법규 등 요구사항	3
2.1 법규 및 규제사항	3
3. 프로세스 목표	3
3.1 성과지표	3
4. Turtle 분석	4
5. 프로세스 흐름도	5
6. 세부업무 절차	6
7. 용어 및 약어 정의	10
8. 첨부	12



# 1 목적 및 적용범위

## 1.1 목적

본 프로세스는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제1호, 제4호,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(이하 “공단”라 한다.)이 ‘철도역(핵심 역세권)부지, 역인근부지,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철도 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## 1.2 적용범위

본 프로세스는 공단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 후 출자회사(이하 SPC)를 설립(공단 출자)하는 업무와 민간제안 공모, 후출자 방식, 출자회사 설립 전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# 2 법규 등 요구사항

## 2.1 법규 및 규제사항

- 2.1.1 국가철도공단법(이하 “공단법”이라 한다)
- 2.1.2 철도건설법
- 2.1.3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(이하 “개발규정”이라 한다)
- 2.1.4 출자회사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
- 2.1.5 자산개발사업처-658호('12.2.29), 출자금 손실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SPC설립 개발사업의 출자시기 선택적 적용(안)

# 3 프로세스 목표

## 3.1 성과지표 (KPI : Key Performance Indicator)

### 3.1.1 개발사업 점용료 수익율

구분	내용
목적	자산개발 활성화
계산 방법	[개발사업의 당해연도 점용료 수익 / 처 현원] × 100
관리책임	자산개발처장
승인권자	시설본부장
측정/보고주기	1회/년
보고방법	부서실적보고서
특기 사항	N/A

## 4 | Turtle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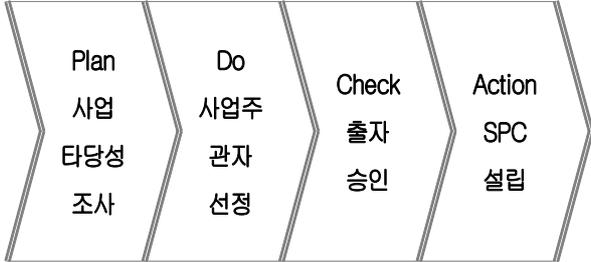
◇ With What?  
(무엇으로? 장비, 수단)  
1.라니스

### 프로세스 유형

안전 품질	설계 관리	구매 관리
시공 관리	유지 관리	경영 지원

◇ With Whom?  
(누가? 적격성, 숙련도, 교육훈련)  
1.자산개발처(자산개발부, 역세권  
개발부, 역사개발부, 복합개발부)  
2.개발관련 외부위탁교육

◇ Input(입력)  
1.개발후보지 선정  
(국유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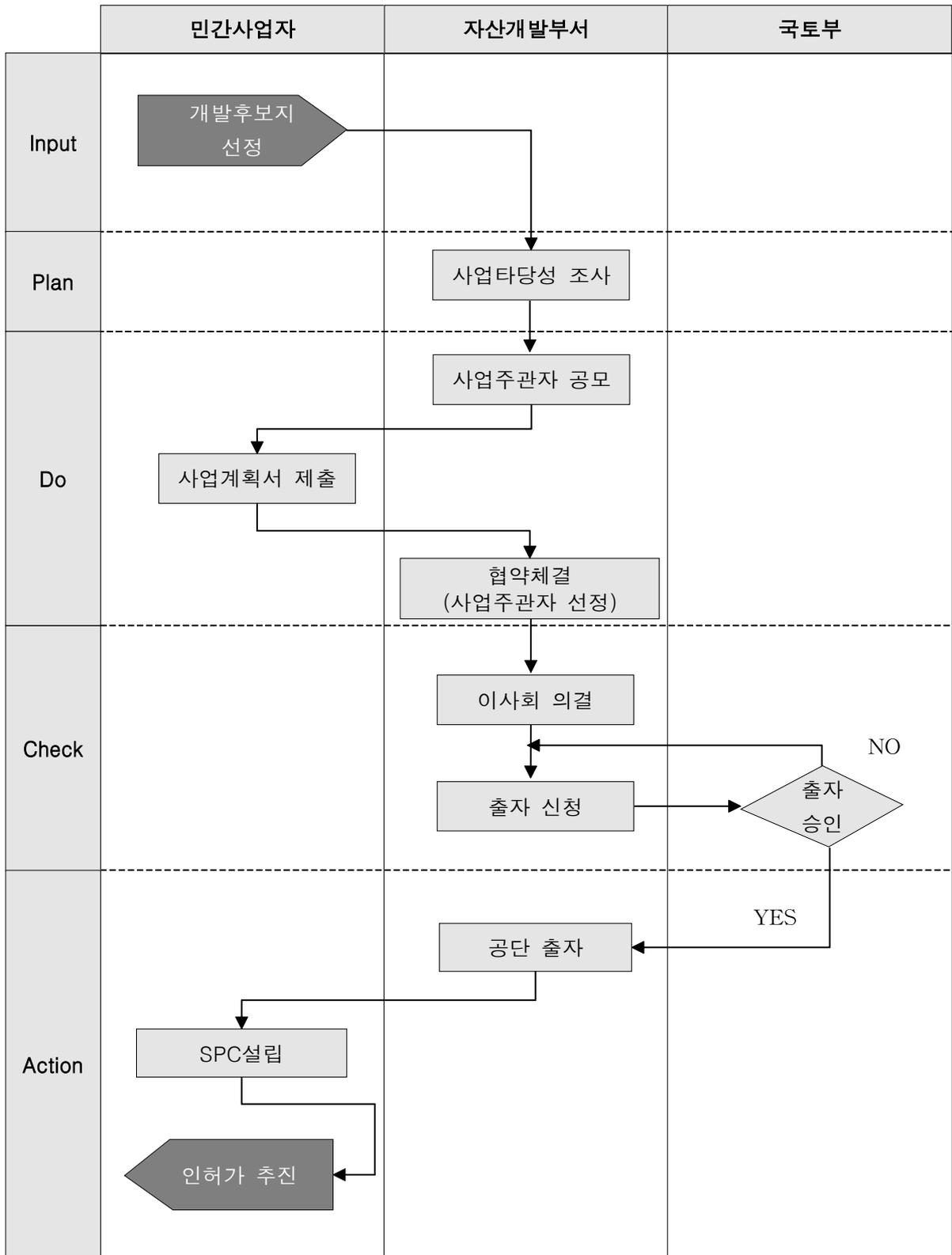


◇ Output(출력)  
1.회사설립 등기증

◇ How?  
(어떻게? 방법, 지침, 관련지원)  
1.타당성조사→사업자선정→출자→  
SPC설립  
2.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  
3.철도건설법

◇ What Result?  
(얼마나? 측정, 성과 평가지표)  
1.개발사업 점용료 수익율

## 5 | 프로세스 흐름도



## 6 세부 업무 절차

### 6.1 자산개발사업 추진(일반)

- 6.1.1 사업을 추진할 개발후보지를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개발후보지 선정
- 6.1.2 후보지에 대한 자문 및 용역 시행
  - \* 사업지 특성에 따라 자문 또는 용역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음
- 6.1.3 사업추진계획은 2이상의 사업을 함께 수립할 수 있으며, 공모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.
- 6.1.4 공모계획에는 공모지침서와 모집공고문을 포함하여야 함.
  - \* 공모지침서에는 반드시 공단의 출자시기, SPC 설립자본금 가점 기준, 철도시설기여금 등을 기재.
  - \* 공모계획 수립 전에 공고비, 평가비등 사업추진 예산을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
  - \* 공모지침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, **공고 전 계약처 및 법무처에 공모지침서 검토 요청 후 의견 반영**
- 6.1.5 모집공고는 가능한 1개이상 일간신문에 하도록 하고, 공고기간은 사업의 규모 및 절차 등을 감안하여 30일 이상 부여
  - \* 모집공고 전에 홍보실과 공고 일정 등 공고를 위한 협의를 시행하고 공고의뢰
- 6.1.6 모집공고 이후 사업설명회와 질의응답을 할 경우 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공모지침서, 도면 등의 배부방법을 모집공고문에 기재하여 공고
- 6.1.7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(첨부1 서식)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
  - \* 사업참가신청보증금(서) 납부: 총사업비의 2%(사업신청서류는 지정된 보관함에 봉인)
- 6.1.8 사업신청서 접수 체크리스트(첨부2·첨부3 서식)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점검
- 6.1.9 평가일, 자산개발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수립
  - \*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서류 접수 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
  - \* 위원회는 외부위원만으로 구성.
- 6.1.10 평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
  - 평가 장소, 진행요원 선정, 업무분장, 평가 시나리오 등
  - \* 자산개발부서는 평가위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 등에 협조
- 6.1.11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화섭외를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보안 조치
- 6.1.12 평가위원과 진행요원은 평가장에 입실하여 평가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위원장 확인 (첨부4 서식) 후 평가 종료
  - \*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며, 진행요원은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.
- 6.1.13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며, 사업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
  - 주관부서는 최고점수를 획득한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

- \* 평가는 사업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(시중은행 영업일 기준, 이하 동일) 시행
  - \* 평가에 참여한 위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.
- 6.1.14 공단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
- \* 표준 사업추진협약서(첨부14)를 기준으로 사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조정
  - \* **사업추진협약 체결 전 법무처에 사업추진협약서 검토 요청 후 의견 반영**
  - \* 협약이행보증금 납부(총공사비의 5%이상)
  - \*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
  - \* 협약체결 이후 사업주관자 지위 갖음
- 6.1.15 공단법, 관리지침에 의거 출자를 위한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
- 6.1.16 사업주관자는 SPC 설립에 관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추진
- \* 출자자의 출자지분 배분 및 설립자본금 납입, 출자회사 정관의 작성 등
- 6.1.17 공단출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
- 6.1.18 출자승인 신청서(첨부5 서식)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
- \* 국토교통부장관의 출자승인 받은 후 SPC에 출자의견 통보
- 6.1.19 발기인회 대표사 선임, 회사명, 본점소재지, 법인설립계획 등 의결
- \* 발기인은 사업주관자 및 공단을 반드시 포함.
- 6.1.20 주금납입일 확정, 창립총회 개최일정, 정관(안) 승인, 주금납입계좌 등 의결
- \* 협의 등에 따라 발기인회 추가 개최 가능.
- 6.1.21 발기인(공단 포함)은 발기인회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출자금을 납입
- \* 공단 출자금은 회계관련 부서와 협의
  - \* 별도계좌가 아닌 발기인 대표 계좌일 경우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정지 공문 징구
- 6.1.22 SPC 설립에 필요한 서류(첨부6 서식)에 법인 인감 날인
- 6.1.23 정관 승인, 이사 및 감사 선임,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, 창립사항 보고사항 등 의결
- \*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,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
- 6.1.24 정관은 법률사무소에 공증
- \* 정관은 공증으로 효력 발생
- 6.1.25 법인설립 등기 완료(출자회사 설립)
- \*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내 설립등기
  - \* SPC로부터 공단 출자금에 대한 주식을 인수 받아 회계부서에 보관
- 6.1.26 공단과 사업주관자가 출자하여 설립된 SPC는 개발사업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인허가를 추진

## 6.2 민간제안 공모

- 6.2.1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

- 6.2.2 공모계획에는 대상지, 참가자격, 일정, 제안서 작성 내용, 심의계획, 우수제안자 특전 등을 포함하여 작성
  - \* 공모계획 수립 전에 공고비, 평가비등 사업추진 예산을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
- 6.2.3 모집공고는 사업주관자 후보자 모집공고 절차 준용
- 6.2.4 제안서 접수
- 6.2.5 제안서 심의 의뢰 전 공단 자문기관에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 시행
- 6.2.6 자산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심의
  - \* 제안서 접수 완료일로부터 100일 이내 시행
- 6.2.7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
- 6.2.8 채택된 제안사업은 사업주관자 공모 시행

### 6.3 공단 후출자 방식

- 6.3.1 사업주관자는 SPC 설립에 관한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추진
  - \* 출자자 지분 배분, 발기인회 대표사 선임, 회사명, 본점소재지, 법인 설립계획, 주금 납입일 확정, 창립총회 개최일정, 정관(안)승인, 주금납입계좌 승인 등 의결
  - \* 발기인으로 공단은 참여하지 않음.
- 6.3.3 발기인(공단 미포함)은 발기인회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출자금을 납입
- 6.3.4 발기인들은 SPC 설립에 필요한 서류(첨부6 서식)에 법인 인감 날인
- 6.3.5 정관 승인, 이사 및 감사 선임,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, 창립사항 보고사항 등 의결
  - \*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,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
- 6.3.6 정관은 법률사무소에 공증
  - \* SPC는 공증받은 정관을 공단에 제출
- 6.3.7 법인설립 등기 완료(출자회사 설립)
  - \*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내 설립등기
- 6.3.8 SPC는 사업의 자원조달, 인허가를 추진
- 6.3.9 SPC는 공사 착공이 6개월이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공단에 출자를 요청
  - \* 출자시점 : 사업이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교통영향분석 심의가 완료 또는 완료가 예상되는 시점
- 6.3.10 SPC의 출자요청 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출자 결정
  - \* 6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 여부 판단
- 6.3.11 출자를 위한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
- 6.3.12 공단 출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
- 6.3.13 출자승인 신청서(첨부5 서식)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
  - \* 국토교통부장관의 출자승인 받은 후 spc에 출자의견 통보



6.3.14 공단(국토부)에서 출자를 승인 한 경우 spc에서는 주금납입 일정 등을 공단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주금 납입 요청

6.3.15 회계관련 부서와 출자금 집행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금 납입

\* SPC로부터 공단 출자금에 대한 주식을 인수받아 회계부서에 보관

6.3.16 SPC는 지자체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

## 6.4 출자회사 설립 전 협약 해지

6.4.1 사업주관자는 사업추진협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 출자회사를 설립

\*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
6.4.2 주관부서는 정해진 기간내 또는 상호 협의한 기간내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최고(3회) 통보 조치

6.4.3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개발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업추진 협약을 해지

\* 해지 방침 후 즉시 해지 공문 통보[등기 발송+추가(인편방문, 메일, 전화)]

6.4.4 주관부서는 협약 해지 후 해당 보증보험사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청구



## 7 용어 및 약어 정의

### 7.1 자산개발부서

공단법 제7조 제4호,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직접 또는 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발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.

### 7.2 민간사업자

공단이 출자하는 출자회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말하며, 출자회사, 점용권자, 사업주관자, 사업신청자,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7.3 개발사업

공단법 제7조 제4호,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직접 또는 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.

#### 7.3.1 역세권개발사업

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제6호의 역시설 개발사업, 공단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사업,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.

#### 7.3.2 철도부근 지역의 개발사업

역세권개발사업 제외한 역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나대지, 유휴부지나 철도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철도부지, 폐선부지 및 공단소유부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말한다.

### 7.4. 공모방식

공단이 개발대상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관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.

### 7.5 민간제안방식

공단의 업무에 적합한 개발사업을 민간의 자율적인 제안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.

### 7.6 출자회사

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법 제21조 및 공단 정관에 따라 공단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.

### 7.7 사업주관자

출자회사의 설립, 시설물의 건설과 운영, 재원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거나 지원하여야 할 자로서 개발규정 제19조에 의하여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### 7.8 사업신청자

공단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(이하 “컨소시엄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

## 7.9 사업주관자후보자

공단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여 개발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## 7.10 공모지침

공단이 사업주관자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모집 공고 시 제공하는 지침을 말한다.

## 7.11 사업계획서

사업신청자가 사업주관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.

## 7.12 컨소시엄 대표자

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그 구성원을 대표하여 대외협의를 및 총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, 향후 출자회사 구성원 중 최대로 출자하거나 출자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.

## 7.13 국가귀속시설

출자회사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시설물을 말한다.

## 7.14 철도시설기여금

출자회사가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에 납부하기로 한 약정금을 말한다.

## 7.15 영업시설

출자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.

## 7.16 총사업비

사업신청자가 출자회사에 출자할 자기자본과 출자회사로 하여금 조달하게 할 타인자본의 합계액으로서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.



## 8 | 첨부

- 8.1 [첨부 1] 사업주관자 신청서
- 8.2 [첨부 2] 사업신청관련 체크리스트(1차)
- 8.3 [첨부 3] 사업신청관련 체크리스트(2차)
- 8.4 [첨부 4] 평가결과 집계표
- 8.5 [첨부 5] 출자승인 신청서
- 8.6 [첨부 6] SPC(출자회사)설립에 필요한 서류
- 8.7 [첨부 7] SPC 표준 정관
- 8.8 [첨부 8] 주식인수증
- 8.9 [첨부 9] 창립사항 보고서
- 8.10 [첨부 10] 창립총회 기간 단축 동의서
- 8.11 [첨부 11] 위임장
- 8.12 [첨부 12] 주식청약서
- 8.13 [첨부 13] 표준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
- 8.14 [첨부 14] 표준 사업추진협약서